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재웅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72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정재웅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고병국, 김제리, 김화숙, 박상구,
이병도, 이준형, 문장길, 최웅식,
김정태, 임만균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이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(이하 '공사')가 건설하는 주택으로 한정됨에 따라 공사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매입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,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사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포함되도록 개선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을 시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조정(안 제2조제2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주택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가목 중 “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”를 “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청년주택”이란 시장,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자인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역세권에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임대주택을 말한다. 다만, 오피스텔은 제외한다.</p> <p>가. 공공임대주택 :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주택 중 <u>시장이 임대사업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</u></p> <p>나. (생 략)</p> <p>3. ~ 6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<u>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</u> ----- -----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